의 안 번 호	제 182 호		
의 결	2023		
연 월 일	(제 회)		

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안 지 윤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월 4일

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안지윤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

발의연월일 : 2023년 1월 4일

발 의 자 : 안지윤, 이옥규, 이상정,

김정일, 박봉순, 안치영,

조성태

1. 제안이유

O 충북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(안 제1조, 제2조)
-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3조)
- O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4조)
- O 걷기운동 포인트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5조)
- O 걷기 사업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8조, 제9조)

3. 의**안전문**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- 4호

다. 협 의 : 보건정책과

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걷기 사업"이란 충청북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.
 - 2. "걷기 앱"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말한다.
 - 3. "걷기 포인트"(이하 "포인트"라 한다)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.
 - 4. "참여자" 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고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
 - 2.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
 - 3.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제4조(지원 내용)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
 - 2. 걷기 앱 개발 및 운영
 - 3.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
 - 4.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
 - 5.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
 - 6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-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.
 - 1.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
 - 2.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
 - 3. 그 밖에 도지사가 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- ④ 제3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5조(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) ① 참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- 1.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화폐, 전통시장상품권, 지역서점이용권 등으로 교환
 - 2.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
 - 3.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
 -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없다.
 - 1.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
 - 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

- 제6조(기록·관리)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, 포인트의 지급, 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기록·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7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9조(비용의 지원)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민건강증진법

- 제4조의2(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(이하 "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 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- 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<u>지방자치단</u> 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건강증진사업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
 - 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 - 2. 영양관리

3. 신체활동장려

- 4. 구강건강의 관리
- 5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
- 6.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
- 7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-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·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충북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(걷기 앱을 통한 목표 달성 시)
- 걷기 앱 사용료 지급
-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4조(지원내용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<u>2022년 예산을 기준</u>으로 하되,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・도비 보조사업 반영하여 추계

रो ले म	지원내역			
사업명	지원내용	예 산(′22)		
	계	6,889,430천원		
지역사회통합건강증 진 사 업	지역사회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건강행태개선 *13개영역: 음주폐해예방(절주), 신체활동, 영양, 비만예방관리, 강보건,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, 한의약건강증진, 아토피·천식예방관리, 여성·어린이특화, 치매관리, 지역사회중심재활, 방문건강관리, 금연	349,732천원 (걷기활성화사업)		

□ 개 요

○ 기 간 : 2022. 1. ~ 10.

○ 대 상 : 충북도민 중 스마트폰 사용자

○ 내 용

- 커뮤니티 개인별, 그룹별, 목표 걸음 수 달성자(마일리지 적립으로 인센티브 지급)
- 걷기 앱 활용 이벤트(챌린지) 운영 및 앱 사용료 지급
- 걷기 정보제공 및 걷기실천 홍보·캠페인 등

○ 워크온 가입 걷기 실천자(우수자) 보상

구 분	목 표	인 원	보상 종류	비 고
매월 목표달성	산책길 스탬프, 챌린지,이벤트 1주 5만보, 2주 10만보 등	커뮤니티 가입자	 모바일상품권(커피쿠폰, 모바일, 문화상품권, 편의점, 지역상품권, 주스 등) 홍보물품(양우산, 도시락통, 콩, 멸치, 버섯, 잡곡, 땅콩, 장우산, 여행용파우치, 슬링백, 칫솔세트, 파스, 마스크, 칫솔살균기, 폴딩카트 등) 	- 매월 정기적 진행 - 중복 지급 불가 - 1일 1만보 제한

나. 추계 결과 :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,748,660천원 소요

○ 참 여 자 : 171.616명(커뮤니티 가입자)

○ 달 성 자 : 90,790명○ 지급인원 : 30,282명

○ 예 산 액 : 1,748,660천원(기금 874,330⁵⁰⁸, 도비 174,865¹⁰⁸, 시군비 699,465⁴⁰⁸)

○ 기타보상금 및 사무관리비(22.1.~10월 기준)

- 2022년도 걷기 모바일상품권(커피, 편의점 등) 구입 : 101,033천원

- 2022년도 걷기 이벤트 홍보물품 구입 : 140,126천원

- 2022년도 걷기 앱 연간사용료 : 108,573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50%, 도비 10%, 시군비 40%(각 사업별 기준보조율 상이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 천원)

구 분	그 ㅂ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	丁 七	(2023년)	(2024년)	(2025년)	(2026년)	(2027년)	
서	입	174,866	174,866	174,866	174,866	174,866	874,330
	국비	174,866	174,866	174,866	174,866	174,866	874,330
	도비						
서	출	349,732	349,732	349,732	349,732	349,732	1,748,660
통합)	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걷기사업)	349,732	349,732	349,732	349,732	349,732	1,748,660
7	내원 조달	349,732	349,732	349,732	349,732	349,732	1,748,660
	소 계	174,866	174,866	174,866	174,866	174,866	874,330
의존	보조금	174,866	174,866	174,866	174,866	174,866	874,330
재원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34,973	34,973	34,973	34,973	34,973	174,865
자체	지방세	34,973	34,973	34,973	34,973	34,973	174,865
수입	세외수입						
	시군비	139,893	139,893	139,893	139,893	139,893	699,465